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1561
----------	------

발의연월일 : 2007. 5. 4.  
발 의 자 : 김기완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함.(안 제3조)
- 다. 장수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함.(안 제4조)
- 라.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동장으로부터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월 1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함.(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

## 참고 자료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별첨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 장수수당은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전입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장수수당 지급 신청자의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안산시에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동장 및 시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②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동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신청 위임장

위임한 사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동)

[별지 제4호서식]

( 과)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참고자료

### 1. 지자체별 장수수당 지급 현황

#### ○ 수당지급 대상자요건

- 연령은 75세~95세까지 다양하나 85세와 90세를 기준인 경우가 많음.
- 거주기한은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급액이나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1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구 분		광 역	기 초
대상자	연령 기준	75세	진도
		80세	제주
		83세	수원, 동두천, 의왕, 옹진, 계룡, 양산
		84세	홍성
		85세	영암
		87세	울산 울주, 서대문구, 부천, 안양, 이천, 평택 고성, 공주, 제천, 청원, 서산, 아산, 연기 무안, 진안, 광양, 구례, 남원, 화순, 여수, 완주 사천
		90세	청주, 영광
		95세	울산 남구, 울산 북구, 부천, 성남, 양평, 여주 철원, 옥천, 서천, 강진, 고흥, 보성, 순창, 순천 장흥, 함평, 영주
	거주 기한	부여	
		무관	울산 남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 수원, 성남 의왕, 이천, 여주, 동두천, 고성, 청원, 공주, 부 여 홍성, 계룡, 남원, 진안, 순창, 순천, 사천
		3개월	강진, 구례, 보성
		5개월	장흥
		6개월	무안, 진도
		1년	성남, 부천, 안양, 평택, 양평 옹진, 청주, 제천, 옥천, 금산, 서산, 서천, 연기 광양, 여수, 영광, 영암, 완주, 함평, 화순
		3년	인천
		5년	양산

## ○ 지급액 및 시기

- 대부분 월 단위로 지급하며 3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구 分		광 역	기 초
지급액	연	10만원	서대문구(매년)
		30만원	인천(80세 당해연도)
		50만원	인천(95세 당해연도)
		100만원	인천(100세 당해연도)
	분기	6만원	홍성
		2만원	강원 제주 울산 남구(85~99세), 울산 북구, 울산 울주 부천, 안양(85~89세), 동두천, 의왕, 평택, 여주 청원, 공주, 서천, 아산
	월	3만원	대전 울산 남구(100세이상), 수원, 성남, 안양(90세 이상), 이천, 양평, 옹진, 고성, 광양, 여수 순천, 영암, 장흥, 진도, 함평, 화순, 무안 진안, 청주, 금산, 부여, 옥천, 제천, 연기(85~89세), 사천, 양산(80~84세)
		5만원	서산, 연기((85~90세), 강진, 보성, 영광, 완주 양산(85~90세))
		10만원	양산(90~95세)
		20만원	양산(90~100세미만)
		30만원	양산(100세이상)

## 2. 예산수반사항

- 조례안에 따라 85세이상, 월 3만원 지급시 연간 소요예산은 744,480천원임.

(단위:명,천원,%)

연령기준	대상인원	전체 인구대비 비율	연간 소요예산	
			월 2만원 지급시	월3만원 지급시
80세이상	5,687	0.81	1,364,880	2,047,320
85세이상	2,068	0.30	496,320	744,480
90세이상	535	0.08	128,400	192,600
95세이상	84	0.01	20,160	30,240
100세이상	7	0.00	1,680	2,520

※ 인원 수는 2006년도말 현재기준임.

## 3. 인근 지자체 장수수당 확보예산(2007)

(단위:명,천원,%)

구분	총 인구(명)	대상자 연령기준	대상인구 수/비율	월지급액	장수수당 확보예산	전체예산액 /전체예산 대비비율	노인복지예산액 /노인복지예산 대비비율
수원	1,068,906	80세	10,010 (0.9)	30	3,603,600	800,053,543 (0.45)	36,812,779 (9.8)
성남	964,831	90세	1,224 (0.1)	30	440,640	941,177,944 (0.05)	50,020,145 (0.9)
부천	860,020	85세	2,765 (0.3)	30	663,600	560,141,038 (0.12)	25,607,598 (2.6)
안양	624,280	85세	2,283 (0.4)	20 90세이상 30	819,837	504,525,612 (0.2)	15,867,871 (5.2)
안산	698,819	85세	2,068 (0.3)	30	744,480 (추정)	506,639,102 (0.15)	17,236,534 (4.3)

## 4. 노인대상 현금급여 지급현황

(단위:천원)

구 분	대상	지급액	2007년도 소요예산			
			계	국비	도비	시비
경로연금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	수급자 80세이상 월50천원 65~79세 월45천원 차상위 단독수급자 월35천원 부부동시수급자월 30,630천원	2,351,802	1,599,869	334,300	417,633
노인교통비	65세이상 모든 노인으로 신청한 자	매분기 일반노인(36,000원) 저소득노인(42,000원)	4,764,810	-	714,721	4,050,089

## 5. 기초노령연금법 입법현황

- 발의자 : 강기정 의원외 78인
- 처리현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6.12.7 수정 가결, 현재 법사위 심사중
-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 전체노인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은 10만원, 일반노인은 7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함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61
----------	------

제안년월일 : 2007. 5. 18.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정주의식을 높이고,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만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거주 기간을 설정하여 수정함.  
(안 제3조)
- 수당의 소급지급을 삭제하고 만 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 대한 금품 지급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 ① 장수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하며,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노인 중 만 100세가 되는 날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u>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u></p>	<p><u>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u></p>
<p><u>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장수수당은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전입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u></li> <li><u>2.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u></li> <li><u>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u></li> <li><u>4. 장수수당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u></li> </ol>	<p><u>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① 장수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하며,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u></li> <li><u>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노인 중 만100세가 되는 날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u></li> </ol>